



영동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의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 두 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재산 등록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자료 거래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감사사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에 속하는 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과	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 징계령」 제21조
	지방공무원 평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평정서·평정표,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다면평가 자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단 정기평정 결과	난계국악단 정기평정 결과 점수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운영조례제72조의2 제5항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긴급복지일반	긴급지원 대상자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3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가족행복과	보호여성 상담	가정·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 치료 관련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무과	지방세 부과 및 조정	지방세 부과나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보건소	에이즈 관리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감염병 등 환자명부 관리	-환자 진료 (일반,한방,임상별리검사,물리치료, 방사선,재활등)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관리 -감염병 환자명부관리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의료법 제19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행정과	비밀·보안	-보안문서의 수발 및 심사사항 -비밀취급인가 사항 -보안감사 및 비밀취급 문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정보보안업무	-정보업무 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 시스템 관련자료 -보안성 검토 및 정보 보안진단 결과	“
	보안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방화벽, 암호화장비 등의 보안정책, 접속로그 및 운영 관련자료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과	비상 대비훈련 등에 관한 정보	-을지연습 시행계획 -지방재정 시행계획 -충무·화랑 훈련계획 -비상 대비 계획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정보통신보안	-IP 및 전산장비 관리대장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정보	“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민방위대 편성표 및 신고망 등 민방위대 현황	“

※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 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 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 통	청사 경비관리	-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내용 -방호계획, 테러대비 등 재난대비 자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기획감사실	부정행위자 정보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 -통보자·피의자·참고인에 관한 사항	"
행정과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 현황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가족행복과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정보 및 지급내역	"
	가정·성폭력 방지법에 의한 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자에 대한 정보	"
민원과	지적사무	지적측량성과 자료 및 측량결과도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재무과	세무조사	납세자(개인/법인) 과세정보	"
안전관리과	CCTV관제센터 전산장비 관리	CCTV 통합관제실 내부 서버, 장비등의 배치도 및 현황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각종 행정처분관련 고발장에 관한 정보	각종 행정처분(고발, 파태료 등)과 관련된 고발장, 사전통보 등에 관한 정보	
기획감사실	소청	소청에 따른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진행 중인 소송관련 자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관련 소송	문화관광과 관련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재무과	재산세구제, 지방세행정소송, 공유재산소송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관련 피의자 수사자료 등 검찰송치 자료	"
	무단방치차량 처리	사건수사관계 서류	"
	무보험 운행자 송치	진행, 수사중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처리 제반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농정과	농지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산림과	산림불법행위사법처리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산림사법 관련	산림사법 수사, 재판, 불법예방 등 관련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 당해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건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 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 통	위원회 관련 (회의록)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 등 (인사위원회, 공적심사, 군민대상심사, 정보공개심의회, 농업소득조사위원회 등)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입찰 관련 정보	-입찰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 -입찰 유자격자 명부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공정한 계약업무 지장초래
	공사 관련 감사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원 감사수감 및 처리, 감사원 이송민원처리	감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	감사 관련 정보
	법무일반관리	내부검토판정에 있는 사항	내부검토판정 정보
	예산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공개될 경우 군정의 중요정책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론 및 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판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영동재정투자심사위원 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판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 평가, 과제 등 관련 정보	
행정과	조직관리	-부서별·개인별 업무진단 사항 -비정규직 무기전환에 관한 사항 -조직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인사관리 정보
	시험관리	각종 시험응시자, 합격자 인적사항 및 성적	"
	공무원보수및수당, 호봉관리	공무원 연봉, 수당 및 호봉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인사교류	공무원 전출입, 파견 관련 정보	"
	공무원임용 및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공무원 임용, 승진 관련 정보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관련 정보	"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평정서·평정표, 서열명부	"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재무과	공사계약관리	계약 관련 정보	계약정보
	계약심사	감사, 감독, 검사 등 정보	"
	입찰·계약	-입찰·계약업무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입찰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등 계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설계·시공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계약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환경과	환경 관련 업무 지도 단속관리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 계획 및 점검자료	내부검토판정 정보
안전관리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	-보상협의 관련서류 -하천 구역내 사유토지 조서 등	내부검토판정 정보
	폐천부지 매각	폐천부지 불하(하천 점용지)	"
도시건축과	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심의사항	내부검토판정 정보
	군계획위원회 자료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
	주택건설 사업 승인	-사업승인 설계도서(부분도면 제외)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민원업무 처리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산림과	사방사업(사방댐), 임도신설	-설계내역 검토 등 입찰정보 설계도서 -기술자문단 타당성 평가 내역	"
	조림사업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
농정과	농림사업일반, 소득임산물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 심사내역 -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사업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 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성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 통	위원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
	각종 인허가·등록 신고 업무	-신고 관련 인적사항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
	포상(상훈)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오악서 등 포상관련 자료 -민간인 표창상신 및 추천서 개인 정보	"
	비정규직 관리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자료 -근로계약 및 채용에 관한 자료 -인적사항 및 그 밖의 개인별 관리자료 -보험가입 관련자료	"
	공무원 징계·재심 관용심사 등 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공무원관련 정보·민원통보이첩 등 조사계획 및 결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기획감사 담당과	행정심판, 소송관련	행정심판, 소송관련 관련자료 및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명예감사관제운영	감사관 개인정보 포함	"
	공직부패 및 청렴도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
	공직자선물신고접수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
	공직자재산등록심사 및 공개관리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운영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
행정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및 사망조위급 지급, 직립급여압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인사	-공무원 징계에 관한 서류 -시험원서·답안지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등의 개인정보	"
	공무국외여행허가및관리	공무국외여행허가 관련 정보	"
	정부포상	포상(공적조사, 인사기록오악서, 공적심의의결서, 민간인 포상) 관련 정보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정보	"
	행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 신청자 개인정보	"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사이버운영 관리 및 정보화	-부서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자 인적사항 개인정보	"
	이반장관리, 선거관리일반	-이장자녀 장학금, 이반장 포상 관련 정보 -읍면위원회 및 투표관리관 등	"
	자원봉사센터관리, 운영지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보조금 관련 정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보조금 관련 정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정보	"
	채용 및 인사 관리	-계약직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자료 -공무원 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공무원 연봉, 수당, 호봉 관련 자료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 관련 자료 -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공무원 연금 자료 -직원 보혈 자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 자료(퇴직금, 보혈 등) -노동조합 관련 자료 -공무원 대여 학자금 관련 자료 -교육신청, 교육비, 상시학습, 교육수료 관련 자료 -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
주민복지과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자 정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정보	개인정보보호
	3.1절 및 현충일행사 지원	3.1절 및 현충일 행사 관련 대상자 정보 및 계좌정보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운영, 자활사업 관리	-모니터단 인적 사항 -자활사업대상자 인적 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정보 -위기사례관리가구 대상자 정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대상자 정보	"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생활시설입퇴소, 장애인복지시설생계급여	-의료비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입퇴소자 인적 사항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	-언어발달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장애인활동보조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
	사회복지법인결격사유조회	사회복지법인 임원 인적사항	"
	의료급여사례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
	장애인등록, 장애인통합복지카드교부,	-장애인등록 인적 사항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자 인적 사항	"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무료 신문보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자 현황 -장애인무료신문보급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노인장수수당, 노인일자리관련,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인적 사항 -기초연금 대상자 정보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인적 사항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적 사항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
	확장장려금지원, 공설묘원관리	-확장 장려금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공설묘원 사망자 인적 사항 및 관리자 인적 사항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장사업무일반, 가출노인 및 노인사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인적 사항 -사망자 인적사항 -가출노인 및 노인사고 대상자 인적 사항 및 사생활 정보	"
	부랑인·행려자 관리	부랑인·행려자 인적사항	"
	저소득층 지원 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대상자 인적사항	"
	사회복지시설 증사자 관리	사회복지시설 증사자 인적사항	"
	시설입소 관리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인적사항	"
가족행복과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구인 및 구직 신청 대상자 정보	개인정보보호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장결정,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양육 및 보육지원 대상자 보장결정 및 지원 사항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인적사항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및 신고자 인적 사항 -청소년수련관 증사자 인적 사항	"
	입양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요보호아동지원	-입양아동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가정위탁아동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각종 아동지원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인적 사항 및 수당 지급내역	"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아동발달계좌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아동 인적 사항 -아동급식대상자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대상자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
	여성인명록 관리	인명록의 개인 인적사항	"
	차세대 여성 지도자 교육운영	여성 지도자 교육관련 개인 인적사항	"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다문화가정 대상자 인적사항	"
	그룹 홈 입소 아동관리	그룹 홈 입소아동 인적사항	"
	다중이용허가 등 대상 업소	다중이용업 허가 신고 등 변경통보	"
	식품품목제 조보고	식품품목제 조보고	"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중 및 식품관련 영업신고	허가, 등록, 영업신고, 지위승계, 폐업신고, 변경신고 등	"
	자격증 발급대상	미용, 이용, 조리사, 감시원증 발급	"
민원과	고충민원의 상담, 안내 및 접수 처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원관련 업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관련서류의 개인정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개인정보	"
	여권업무	여권소지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주민등록조회	주민등록자료 전체	"
	영등군전입세대지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부동산 실거래	-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용 -부동산 거래 소명자료,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테로 부과자료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정보	"
	부동산실명제 관리	납세자 제출자료, 과테로부과징수자료, 과테로 부과결정 내부검토자료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침해정보	"
	조상땅 찾아주기	토지자료 이용신청서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정보	"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테로 부과징수	납세자 제출자료, 과테로부과징수자료, 과테로 부과결정 내부검토자료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침해정보	"
	토지거래	토지거래계약허가서	"
	지적재조사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 및 통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공유재산대부계약, 공유재산처분, 공유재산사용허가및대부	-대부자명단 -계약자명단	"
재무과	세외수입환급관리, 지방세환급관리	환급대상자명단	개인정보보호
	세외수입 관리	과테로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	"
	지방세 부과 및 조정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사항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사항 -지방세법칙 사건처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자료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사항	"
	법인 세무조사 및 관리	납세자의 과세정보	"
	체납 정보	체납자 또는 결손자 과세정보	"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무원 급여·수당	-개인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개별 공무원 급여압류 등에 관한 정보	"
경제과	가스일반, 고압가스인허가, 도시가스, 석유판매업민원처리 및 행정처분, 석유판매업일반, 액화석유가스허가	신청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신재생에너지일반, 안전관리자선택임	신청자 개인정보	"
	전기공사업일반, 전기공사업처분 및 결격사유조회등, 전기안전관리부적합관리, 전기일반	신청자 개인정보	"
	담배소매인지정, 담배판매업결격사유조회, 담배판매업폐업휴업, 담배판매업행정처분, 대부업일반	신청자 개인정보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
환경과	탄소포인트제지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지원 현황	개인정보보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 현황	"
	신고포상금	환경오염 신고자 인적사항	"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폐기물법 위반 처리계획 신고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환경미화원관리	-신규채용에 관련한 자료 -채용관련 신원조회 기록 -개인별 인사기록	"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신고, 사용허가 등	허가자의 인적사항 및 허가관련 서류	개인정보보호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일자리창출사업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인부 등 참가자 인적사항	"
	조림사업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개인별 보조내역 및 투자금액	"
건설교통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 자료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자료	개인정보보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행정처분대상 위반내용	개인정보보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관련서류	"
	자동차압류해제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등록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교부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
	건설기계 등록사항 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안전관리과	민방위인력동원업무, 민방위기술지원대편성및운 영, 민방위대편성계획수립	-민방위 인력동원 현황 -민방위 기술지원대 현황 -민방위대편성 현황	개인정보보호
	사회복무요원운영관리,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 비사업	-사회복무요원 현황 -재난취약가구 명단 및 현황	“
	하천정비사업 등에 따른 토지 및 지장을 보상 관리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과년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
도시건축과	주택조합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주택관리사 신고업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건축위원회 운영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건축인허가 및 민원업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결핵환자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암환자 관리	암(성인, 소아)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자(영유아, 임신부) 및 대상자 등록관리 정보	“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환자 등록관리 정보	“
	정신보건사업일반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
	공중보건의 관리	공중보건의 인사관리부	“
	마약류관리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
	의약무관리	-의약업소개설신고대장 -안전상비의약품판매 등록대장 -의약업소 행정처분 관련 -의료기기업소현황 -소독업소 등록현황 -의약업소지도점검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원내역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
	임산부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정보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
	모자 보건사업	모자 보건사업 교실별 신청자 등록정보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및 대상자 명부	“
	심·뇌혈관 질환 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대상자 인적사항	“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인적사항	“

7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그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 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각종 단체·법인	-이사회 구성 등 인사 관련 자료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등	법인의 이익보호
	인·허가 업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	경영·영업상 비밀보호
행정과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자원봉사센터 법인정보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사회단체 법인정보	“
민원과	개별공시 관련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의견신청결과통지 정보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정보 -공시지가 및 도면의 전산파일	
경제과	보조금 지급	기업 보조금 지급 현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급	자금 융자승인 현황	“
	투자유치 추진 현황	-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투자유치 정보수집 자료 -잠재투자자 관리 등	“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를 하도록 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 통	토지수용 관련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 보상실적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
도시건축과	도시·택지개발	-도시개발 구역 지정사항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사항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산림과	휴양림 조성	휴양림 조성 예정지역 등 추진계획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안전관리과	하천관리	하천 기본계획 고시 심의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9. 기타 비공개 사항

■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공개거부(법 제9조 제1항)

-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의 취급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 공개청구를 행하여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권리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임(법 제9조 제1항 관련)

- 정보제공을 위해 과도한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청구인이 9,029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보공개에 공무원의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공개될 실익은 없는 것이 됨(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판결)

※ 참고 : 권리의 남용금지는 모든 법 영역에서 타당한 법의 일반원칙임
(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법 제14조, 법 제9조 제1항)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전자를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음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정보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법 제9조 제1항)

-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개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음.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청구대상문서가 존재할 경우에,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결정을 하고,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함. 비공개결정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함
- 청구대상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를 이유로 제시하여 거부처분하게 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개청구에 관련된 정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하여 비공개정보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답하는 것에 의한 비공개정보규정의 보호이익의 손상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모든 비공개정보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존부응답거부가 필요한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는 가를 묻지 않고 항상 존부응답을 하여야 할 것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로 답하고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부응답거부를 한다면,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존부응답거부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구자에게 추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임
- 정보의 존부에 관한 응답거부는 처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불복절차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표]

번호	비 공개 대 상 정보	판 단 기 준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 규정 실질적으로도 보호가치 있음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함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유소멸 시 공개대상임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예외적으로 공개가능 정보 > 1. 법령 등 공부 등으로 규정에 따라 열람가능한 정보 2.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취득한 정보 3.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 직위 5. 자격증 필요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여부 6.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해 공무의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예외적으로 공개가능 정보 > 1.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지만 하면 별도의 형량없이 비공개 가능